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고시

『낚시 관리 및 육성법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전운항,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, 수질오염의 방지 및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과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5년 5월 4일

광 양 시



광양시 낚시어선업자·선원·승객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『낚시 관리 및 육성법』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낚시어선어업자·선원·승객의 안전은 물론 해양환경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을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 보호하며, 낚시관련 산업 및 어촌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

이 고시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 광양시에 신고한 낚시어선으로 전라남도 연안 해역에서 낚시어선업을 하는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과 "그 낚시어선의 승객" (이하 "승객" 이라 한다)에 적용한다.

제3조(영업시간 제한)

- ① 하절기(4월 1일 ~ 10월 31일) : 22:00 ~ 익일 02:00
- ② 동절기(11월 1일 ~ 3월 31일) : 22:00 ~ 익일 03:00
- ③ 선외기 설치 낚시어선 : 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
- ④ 단, 레이더, 레이더반사기 등 야간 항해장비 설치 낚시어선은 ①~③ 항에도 불구하고 어선검사 증서상 항해시간을 적용한다.
- ⑤ 낚시승객의 안전상 해경, 관계 공무원 등의 철수 요구가 있을 경우 낚시어선은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.

제4조(낚시어선 영업제한구역)

- ① 『군사시설보호법』,『해상교통안전법』,『항만법』,『개항질서법』,『해사 안전법』등에 의한 제한 및 통제수역
- ② 『문화재보호법』, 『자연공원법』에 의한 보호수역
- ③ 기타 전라남도 연안 시군에서 제한하는 수역(면허 및 허가된 수역 포함)
- ④ 낚시어선업자는 공유수면 또는 면허어장에 뗏목 등을 부설하고 그 구조물의 상판에 승객을 하선시켜 영업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⑤ 낚시어선업자는 위험한 갯바위·간출암 및 육지와 연접하지 아니한 인공구조물에 하선 시켜서는 아니 된다, 다만, 시군별로 낚시승객의 하선을 허용하는 장소는 제외한다.

제5조(안전운항 의무 등)

- ① 낚시어선업자·선원은 낚시어선의 안전을 점검하고 기상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 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, 승객에게 위해(危害)가 없도록 수면의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낚시어선을 조종하여야 한다.
- ② 낚시어선어업자선원은 낚시어선의 검사유효기간 지난 후에는 운항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,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시켜서는 아니 된다.
- ③ 낚시어선어업자 및 선원은 약물중독 상태이거나 혈중 알콜 0.03퍼센트 이상의 음주상태에서는 낚시어선을 조종해서는 아니 된다.
- ④ 낚시어선어업자·선원은 승객을 승선하여 항·포구를 출항 또는 입항하고자 할 때는 출입항 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(이하 "출입항신고기관"이라 한다)의 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.

제6조(수질오염방지) 낚시어선어업자·선원·승객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① 낚시어선의 선내에 쓰레기 종량제에 사용하는 봉투를 비치하고 발생되는 쓰레기를 수집하여야 한다.
- ② 바다에 쓰레기를 버려서는 아니 된다.
- ③ 항구 또는 포구에 입항한 후 출입항 신고기관에 입항신고 시 수거된 쓰레기 봉투를 소지하여야 한다.
- ④ 과다한 밑밥(일명"떡밥")을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.
- ⑤ 납으로 만든 봉돌 등을 사용하거나 바다에 투기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⑥ 분뇨를 수면으로 배출하지 않는 방식의 화장실을 이용하여야 한다.

제7조(수산자원의 보호)

① 낚시어선업자는 이용 승객으로 하여금 『수산자원관리법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포획금지 체장(체중) 이하의 수산동식물을 포획해서는 아니 되며, 만약 포획될 경우 에는 즉시 방류하여야 한다.

② 낚시어선업자는 관내 어촌계에서 소유 관리하고 있는 마을어장 내에 서식하고 있는 정착성 수산동식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

제8조(낚시어선업자·선원·승객의 준수사항) ①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1. 낚시어선업자·선원은 낚시어선에 승선하려는 승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승객명부의 기재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.
- 2. 낚시어선업자·선원은 승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분증 제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.
- 3. 낚시어선업자·선원은 승객에게 구명조끼를 배부 착용토록하고 선내에 쓰레기 봉투 또는 휴지통을 비치하여야 한다.
- 4. 낚시어선업자·선원은 낚시장소에 승객을 안내한 때에는 승객과 상호 연락 체계를 유지하여, 급작스런 기상악화 등 상황 발생 시 승객을 안전하게 대피조치 하여야 하며, 긴급 상황 시 해양경비안전서(122), 소방서(119) 등에 요청하여야 한다.
- 5. 사고발생시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련기관에 보고하고, 인명구조 등 사고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6. 낚시어선업자·선원은 다른 시·군 관할 수역에 승객을 안내하는 경우에는 해당 낚시장소(수역·육역)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가 『낚시 관리 및 육성법』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한 제한사항을(특정도서 출입금지 및 영업제한구역) 준수하여야 한다.
- 7. 낚시어선업자·선원은 무인도, 갯바위 또는 간출암에 승객을 안내할 경우 승객의 안전을 위해 입항 시 하선한 승객을 모두 싣고 입항하여야 한다.
- ② 승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1. 낚시어선에 승선하고자 하는 자는 승객명부의 정확한 작성을 위하여 낚시어선업자선원의 신분증 제시요구에 따라야 한다.
 - 2. 승객은 승선할 낚시어선이 낚시어선업 신고를 필한 어선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3. 승객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, 해양오염방지 등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, 출항 시 및 승선 중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.
- 4. 승객은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『수산자원관리법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포획 금지 체장(체중) 이하의 수산 동물은 포획 즉시 방류하여야 한다.
- 5. 승객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가.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
 - 나. 낚시어선업자의 구명동의 착용지시 및 기타 안전운항을 위한 주의사항 및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
 - 다. 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기타 선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
 - 라. 영업시간외 항행, 영업구역 외 지역에 안내를 요구하는 행위

- 마. 유해 낚시도구 및 부적합 미끼를 사용하는 행위
- 바. 도서 등에서 쓰레기 투기. 취사. 야생 동·식물을 반출하는 등의 행위
- 6. 무인도, 갯바위 또는 간출암에서 낚시하는 승객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입항 시하선한 승객 모두 낚시어선에 승선하여 입항하여야 한다.
- 7.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안전 대비를 위하여 낚시어선업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각 응하여야 한다.
- 8. 승객은 위험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야영 등을 자제하여야 한다.
- 9. 승객은 낚시 중 발생한 쓰레기는 전량 수거하여야 한다.

제9조(승선정원 등의 게시방법) 낚시어선업자가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낚시 어선의 신고확인증 및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게시하는 방법은 별표와 같다.

제10조(벌칙 및 과태료 등) 낚어선업자·선원·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위반한 사람은 『낚시 관리 및 육성법』제53조(벌칙) 및 제55조(과태료)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및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같은 법 제38조(영업의 폐쇄 등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(행정처분기준)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다른 고시의 폐지)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광양시 고시 제2013-108호(2013.7.26.)는 폐지한다.

【별표】

낚시어선의 신고확인증 및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의 게시방법

1. 게시방법

가. 재질 : 아크릴 등 변색되지 아니하는 재질

나. 색상

(1) 글씨 : 검은색

(2) 바탕 : 승선정원 - 흰색

승객준수사항 - 노란색

다. 게시판 및 글씨의 크기

당해 낚시어선의 부착장소에 따라 적정한 크기로 조정하되 누구나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아래(게시방법의 예시)와 같이 직사 각형 형태로 제작

2. 게시판의 부착장소

해당 낚시어선의 갑판실 외벽 등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

3. 게시방법(예시)

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, 승객 준수사항

제 2015 - 00호

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

	명 (법인명)	0 0 0	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	00.00.00.
선원 중 해기사 면허 소지자	성 명	생년월일	면허의 직종 및 등급	
	0 0 0	00.00.00.	소형선박조종사 면허증 YS-S7-○○-○○○	
어선 명세	어선번호	1234567-6462300	어선의 명칭	0 0 호
	총톤수	0.00 톤	어업허가번호 또는 관리선 지정번호	광양시 연안복합 제2014-00호
	선적항	광양시 진월면	최대승선 낚시 어선 승객 수	○ 명
주 영업장소	전라남도 연안해역 일원			
영업시간	어선검사증서상 항해와 관련한 조건을 적용			
영업구역	전라남도 연안해역 일원(0000.00.00. ~ 0000.00.00.)			

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을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2015년 ○○월 ○○일

광 양 시 장

준수사항

『낚시 관리 및 육성법』제35조 제2항에 따라 광양시장이 고시한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표기함.

- 1.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승객명부의 정확한 작성을 위하여 낚시 어선업자의(선원) 신분증 제시요구에 따라야 합니다.
- 2. 승객은 승선할 낚시어선이 낚시어선업 신고를 필한 어선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3. 승객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, 해양오염방지 등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, 출항 시 및 승선 중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합니다.
- 4. 승객은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포획금지체장(체중) 이하의 수산동물을 포획할 경우 즉시 현지수면에 방류하여야 합니다.
- 5. 승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 - 가. 낚시어선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
 - 나. 낚시어선업자의 구명동의 착용지시 및 기타 운전운항을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
 - 다. 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기타 선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
 - 라. 영업시간 외 항행, 영업구역 외 지역에 안내를 요구하는 행위
 - 마. 유해 낚시도구 및 부적합 미끼를 사용하는 행위
 - 바. 도서 등에서 쓰레기 투기, 취사, 야생 동식물을 반출하는 등의 행위
- 6. 무인도, 갯바위 또는 간출암에서 낚시하는 승객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입항 시 하선한 승객 모두 낚시어선에 승선하여 입항하여야 합니다.
- 7.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안전대피를 위하여 낚시어선업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에 즉각 응하여야 합니다.
- 8. 승객은 위험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야영 등을 자제하여야 합니다.
- 9. 승객은 낚시 중 발생한 쓰레기는 전량 수거하여야 합니다.